하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안 번호 1688

제출연월일 : 2018. 03.

제 출 자:하 남 시 장

1. 제안이유

가. 2018. 1. 1부터 납세자보호관을 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선(지방세기본법 제77조)

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납세보호관 설치 : 공보감사담당관(안 제4조)

나. 납세보호관 선발기준(안 제5조)

- 직급기준 : 6급

- 경력기준 :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다. 납세보호관의 업무(안 제6조)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징수 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가. 지방세기본법 제77조, 제147조, 제108조, 제121조, 제89조, 제84조, 제76조, 제26조, 제57조
- 나.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1조의 2,
- 다. 지방세징수법 제25조, 제105조
- 라.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31조
- 마. 지방공무원법 제69조
- 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

6. 예산수반 사항: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결과

가. 입법예고기간 : 2018. 1. 16 ~ 2. 5(20일간)

2018. 2. 6 ~ 2. 19(14일간)

나. 의견내용 : 의견없음

8. 부서협의 결과

가. 규제개혁 관련협의 : 해당없음

나. 성별영향 분석평가 : 의견없음

9. 참고사항: 해당없음

10. 관련부서 : 경기도 세정과 세정팀

하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서 위임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2. "세무부서장"이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 3. "고충민원"이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 4. "납세자보호관"이란「지방세기본법」제77조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5.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가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제1항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납세자보호관

-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 납세자보호관은 공보감사담당관에 둔다.
 - ②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시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자를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1. 직급기준: 6급
 - 2.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 ③「지방공무원법」제69조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중인 자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지방공무원임용령」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내에 있는 자는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법 제77조 제2항 및 영 제51조의2에 따른 납 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 2.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3.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5. 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징수유 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6조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 1. 위법 ·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요구
 - 3.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 차의 일시중지 요구
 - 4.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 5.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세무부서장에게 행사한다.

제3장 납세자보호 업무의 심의

- 제8조(안건 심의 등) ① 고충민원 등 심의는 법 제14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 1.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1백만원이상인 안건
 -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 제2항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 제85 조, 제86조, 제87조, 제92조에 따른다.

제4장 고충민원

- 제10조(고충민원 처리준칙)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의 대상은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이 그 대상이다.
- 제12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 1.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 2. 「지방세기본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3.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 6. 「지방세기본법」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 7. 「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13조(고충민원의 분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충

민원을 처리한다.

- 1. 시장이 결정ㆍ처분한 사안인 경우
- 2. 시장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인 것인 경우
- 3. 그 밖에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4조(고충민원의 신청기간) ①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신청 하려는 자는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 ②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제15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 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위원회 심의·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 가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16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2회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3회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2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 ③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

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 제17조(신청의 취하) 민원인은 신청한 고충에 대한 세무부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 제18조(불이익변경금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신청 전보다 불리한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9조(불복 제외대상)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법 제89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5장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 제20조(조사기간 연장신청) ①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장이 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 ②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범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제외하다.
- 제21조(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제20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 1. 조사기간 연장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 2. 조사기간 연장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 제22조(세무조사 연기신청)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 전까지 하여야 하다.
- 제23조(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22조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 1.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 2.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 제1호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요구한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6장 권리보호 요청

- 제24조(권리보호요청 처리 기본원칙) 권리보호요청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납세자보호관은 법·영 또는 이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며, 세무부서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제25조(고충민원과 구분) ① 권리보호요청은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고충 민원과는 구분된다. 다만 신속한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 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경 우는 제2항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 ② 권리보호요청은 주로 처분을 위한 절차 진행 중 또는 집행이 예정된 경우에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제출되는 민원으로 한다.
- 제26조(요청 대상) ①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 1. 법 · 영 및 지방세관계법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 2. 지방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행위
-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 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 ② 일반 지방세 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 1.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 2.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영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경우 제외한다.)
-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 는 행위
-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 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 제27조(권리보호요청 기한) 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제적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할 수 있다.
- 제28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권리보호요청은 7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로 한다.

제7장 납세자권리헌장

- 제29조(납세자권리헌장 제정) ① 시장은 법 제76조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
 -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헌장의 제·개정 등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30조(납세자권리헌장 준수)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세무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개정취지와 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제31조(지방세 제도개선 의견)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상담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민원 발생원인 분석 이외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2조(제도개선 과제 관리) 납세자보호관은 제도개선 과제를 분석하여 세 무부서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관리한다.

제9장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 제33조(업무의 범위) 시장은 영 제51조의2 제1호에서 제4호까지 업무 이외에도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있다.
 - 1. 법 제26조에 따른 납세자의 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 2. 법 제57조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 3. 법 제25조에 따른 납세자의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 제34조(기한의 연장신청)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35조(기한의 연장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 및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1. 기한의 연장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 2. 기한의 연장 신청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 제36조(가산세의 감면신청) ①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37조(가산세의 감면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의견 및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 1. 가산세 감면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 2. 가산세 감면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 제38조(징수유예 등 신청) ① 「지방세징수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지방세징수법」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39조(징수유예 등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 사실 확인 결과 및 납세담보의 제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1.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 2.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세정과
입 안 자	부서장 직위·성명	세정과장 박건석
	팀장 직위·성명	세정팀장 이상렬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이상렬 (790-6184)

참고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세기본법』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 ③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자격ㆍ권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 2.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 3.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 4.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08조(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인도 명령을 위반한 자
-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질문·검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 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제121조(통고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조사를 하여 범칙의 확증(確證)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벌금상당액"이라 한다) 또는 몰수 대상이 되는 물품, 추징금, 서류의 송달비용 및 압수물건의 운반・보관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이하 "납부신청"이라 한다)를 하도록 통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통고에 따라 납부신청을 하고 몰수 대상이 되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매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때까지 그 물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받은 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범칙사건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
- ④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를 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제12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제84조(세무조사 기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 1.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은닉,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 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3. 지방세 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범칙사건조사로 조사 유형이 전화되는 경우
- 4. 천재지변,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5.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중지사유가 소멸되기 전이라도 세무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연장사유와 그 기간을 미리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하거나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 납세성실도를 검토하여 더 이상 조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

제7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1.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한다)을 조사 (이하 "범칙사건조사"라 한다)하는 경우
- 2. 지방세의 부과 · 징수에 필요한 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망, 질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담보 제공을 요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납부기한연장 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10일이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7.12.26.〉
-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53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3.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되어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55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에는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4. 「지방세법」 제103조의5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이후 확정신고기한 까지 과세표준 신고 및 수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제53조에 따른 무신고가 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경우(제54조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알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

을 신청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 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②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이 법에 따른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사유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전의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 ④ 경력직공무원이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전의 해당 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31.]

『지방세징수법』

제25조(징수유예등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체납처분 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경우
-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승인·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09.2.6., 2009.3.31., 2010.6.15., 2013.12.30., 2015.11.18.〉

- 1. 징계의결요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가 있거나,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가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가. 강등·정직 18개월
- 나. 감봉 12개월
- 다. 견책 6개월
- ②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으로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간 승진임용될 수 없으며, 근신·영창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간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09.2.6., 2009.3.31.〉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승진 제한기간은 직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09.2.6., 2009.3.31.〉
- ④ 삭제 <1996.3.23.>
- ⑤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 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의 경우에만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09.2.6.〉
- ⑥ 삭제 〈2009.9.21.〉
- ⑦ 삭제 〈2009.9.21.〉
- ⑧ 삭제 〈2009.9.21.〉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① <u>법 제77조제2항</u>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 2.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3.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법 ·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 2. 위법 · 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 3.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 4.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③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그 직급 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실적을 <u>법 제149조</u>에 따른 통계자료의 공개시기 및 방법에 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2.29.]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31조(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유예기간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고지유예: 납부기간 개시 전에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수유예등 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 2. 분할고지: 납세의 고지를 하기 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는 경우
- 3. 징수유예: 고지한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끝나기 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 장하는 경우
- 4. 체납액의 징수유예: 납세자가 납세의 독촉을 받은 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 ②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그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④ 법 제25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세액의 납부기한 다음 날 또는 상호합의절 차의 개시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로 한다.